

의안번호	2212162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5.
추계번호	25F439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7년 2,771억원, 2031년 2,85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조 4,134원(연평균 2,827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0조의32)	2,771	2,798	2,827	2,855	2,884	14,134	2,827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0조의32 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)	-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0조의32 (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현행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감안하여, 세수 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년부터 발생
 - 2026~2030년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는 2027~2031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~203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
-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효과는 2024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미환류소득 산출세액을 바탕으로 최근 5년(2020~2024년)간 연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가정
 - 2022년 세법개정으로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으로 한정
 - 동 제도의 적용대상은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이었으나, 개정 이후 2023년 과세연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제한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- (제도개요) 동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당기소득 중 투자, 임금증가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소득(이하 ‘미환류소득’)의 일정부분을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
 - 동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소득 중 환류해야 하는 기업 소득과 환류대상을 통해 미환류소득을 계산한 후, 미환류소득의 20%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
 - 미환류소득은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에서 환류대상을 차감하여 산정
 -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은 기업이 선택한 형태(투자포함형과 투자제외형)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름
 - ※ 투자포함형: 기업소득의 70%, 투자제외형: 기업소득의 15%
- (단, 기업소득 = 각 사업연도 소득 + 국세환급금 등 이자 - 법인세액 등)

- 환류대상은 투자, 임금증가분, 상생협력 지출액에 가중치를 통해 산정
 ※ 가중치: (투자) 1, (임금증가분) 임금근로자 구분에 따라 1~2, 상생협력 지출액 3
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30.12.31.
- 동 제도는 기업소득이 투자,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
 - 2015년 도입 당시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며, 과세대상인 기업은 기업소득의 일정부분을 투자, 임금증가, 배당 등으로 환류하고, 이를 충족하지 못한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비율로 과세
 - 2018년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, 환류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상생협력 지출액을 포함하였으며,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환류해야하는 소득 비중 완화 등 제도 개편
 - 이후 과세대상을 상호출자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으로 축소하였으며,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정

[표 2]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 주요 연혁

(단위: 억원)

시행연도	내용
2015	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- 대상: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(중소기업 제외) - 환류해야 하는 소득: ①과 ② 중 택일 ① 투자포함형: 기업소득 × 80%, ② 투자제외형: 기업소득 × 30% - 환류대상: 투자, 임금증가분, 배당액 등 - 적용세율: 10%
2018	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로 개편 - 대상: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(중소기업 제외) - 환류해야 하는 소득: ①과 ② 중 택일 ① 투자포함형: 기업소득 × 65%, ② 투자제외형: 기업소득 × 15% - 환류대상: 투자, 임금증가분, 상생협력 지출액 등 - 적용세율: 20%
2021	환류해야 하는 소득(투자포함형) 상향 조정 - 투자포함형의 환류해야 하는 소득 기준 상향 조정 * 기업소득 × 65%, → 기업소득 × 70%,
2022	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- 1년 → 2년
2023	적용대상 축소 - 대상: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→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

- (특례실적) 최근 5년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규모는 2020년 1조 658억원에서 2022년 1조 3,339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, 2023년 5,818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4년 9,121억원으로 일부 회복
 - 해당 기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미환류소득 세액 추이를 살펴보면, 전체 산출세액과 유사한 추이로 증감
 - 해당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: 1.0%

[표 2]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규모 추이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
전체	10,658	11,857	13,339	5,818	9,121
-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	2,584	2,696	3,192	719	2,689

주: 연도는 신고 기준

자료: 국세청, 국세통계포털(TASIS)

(2) 추계방법

- 향후 투자·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계
 - 2024년 기준 미환류소득 산출세액 신고실적(2,689억원)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(1.0%)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세수효과 추정

[표 3]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추정치: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, %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
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	2,771	2,798	2,827	2,855	2,884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

2027년 2,771억원, 2031년 2,855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
총 1조 4,134원(연평균 2,827억원) 증가할 것으로 추계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7~2031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투자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(안 제100조의32)	2,771	2,798	2,827	2,855	2,884	14,134	2,827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